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4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민형배・이정문・조 국

이기헌 • 박홍배 • 이수진

김문수 · 조계원 · 안태준

신정훈 · 노종면 · 복기왕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방송공사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.

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.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합니다. 이미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. 제20대 대 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원 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.

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입니다.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공정한 운영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·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합니다.

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될 수 없도록

제한하고자 합니다. 아울러 한국방송공사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.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 다(안 제48조). 법률 제 호

#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제6호 중 "위원의"를 "위원, 전문위원의"로, "아니한"을 "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제5호에"를 "제1항제5호·제6호에"로, "사람의"를 "사람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무원의"로 한다.

7. 제54조의 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 「국 가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퇴 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또는 집행기관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48조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8조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 항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이사의 결격사유) ① 다음	제48조(이사의 결격사유) ①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	
없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	6
률」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	
인수위원회 <u>위원의</u> 신분을 상	<u>위원, 전문위원의</u>
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<u>아</u>	
<u>니한</u> 사람	아니하였거나 대통령직
	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
	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
	<u>지나지 아니한</u>
<u>&lt;신 설&gt;</u>	7. 제54조의 공사 업무와 밀접
	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
	당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
	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무
	직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
	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	② <u>제1항제5호·제6호에</u>
나 고문의 역할을 한 <u>사람의</u>	<u>\range \</u>
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	람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
정한다.	공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

있는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공
<u>무원의</u>